

##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·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09. 4. 20.  
제안자 : 이종호 의원 외

### 수정이유

- 본 조례안은 “청소년상담지원센터”와 “청소년활동진흥센터”를 “충청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”로 통합하는 것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원장을 포함한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가 없으며,
- 이를 규칙으로 정하더라도 조례와 규칙을 동시에 시행되지 않으면 조례 시행 후 규칙이 제정될 때까지는 현재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적용규정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 부칙 제2조를 아래와 같이 신설하고자 함.

### 수정주요내용

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(직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충청북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충청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보며, 원장의 임기는 이 조례에 의한다.